

검 토 보 고 서

■ 조례명

-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 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■ 개정사유

- 문화재 관리와 향토사료 밭굴 및 보존에 따른 전문인력으로 별정직(7급)승인에 따른 임용 범위를 조정하고,
-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- 별정직 공무원 임용범위 확대
 - 부녀상담원, 아동복지지도원, 농기계교관, 보건진료원, 비서, 가정복지담당, 문화재관리인, 사회복지과장, 의회전문위원등
- 별정직 임용자격 기준을 규칙으로 정함.

■ 검토결과(의견)

- 문화재 관리를 위한 별정직 정원의 승인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조정한 것은 좋으나,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6조 ②항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,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며,
- 금번 지방조직 개편 지침중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정비지침에도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「아동복지지도원」 「부녀상담원」 등은 일반직화 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, 새로이 별정직 임용범위로 추가된 「가정복지담당」 「사회복지과장」 등을 굳이 별정직 임용 범위로 규정해야 할 것인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,

- 상위법규 관련, 개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제1항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무녀상담원
2. 아동복지지도원
3. 농기계 교관
4. 사회복지 전문요원
5. 보건진료원
6. 비 서
7. 가정복지담당
8. 문화재관리원
9. 사회복지과장
10. 의회전문위원

제4조 제2항 단서중 '비서관 또는 비서'를 '비서'로 하고, 동조 제3항중 '군수가 정할 수 있다'를 '규칙으로 정한다'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'(시행규정)'을 '(시행규칙)'으로 하고, '군수가 따로 정한다'를 '규칙으로 정한다'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